광양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·관리 조례안 심사 보고

의안 번호	4343

2025. 10. 17.
총 무 위 원 회

1. 심사 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: 2025. 9. 30. 박문섭 의원

나. 회부 일자: 2025. 9. 30. 회부

다. 상정 일자: 제342회 광양시의회 임시회(2025. 10. 17.) 상정, "원안의결"

2. 제안 요지

가. 제안 이유

○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기억과 시민들의 평화·인권 의식 고취를 위해 기념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소녀상을 보호·관리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나. 주요 내용

○ 조례의 목적 및 정의 (안 제1조~제2조)

○ 시장의 책무 (안 제3조)

○ 사업 및 지원 (안 제4조)

○ 평화의 소녀상 보호·관리 (안 제5조)

○ 시행규칙 (안 제6조)

3. 검토 의견

○ 이 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「지방자치법」, 「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·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」에 근거하여,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관련 기념사업 지원, 평화의 소녀상 보호·관리 체계 마련을 통해 시민들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평화 및 인권 의식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,

○ 본칙 총 6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, 본칙에는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～제2조), 시장의 책무(안 제3조), 사업 및 지원(안 제4조), 평화의 소녀상 보호·관리(안 제5), 시행규칙(안 제6조)을, 부칙에는 이 조례 시행일을 규정하였음.

○ 일본군위안부 명예 회복·역사교육·시민 의식 향상 및 조형물의 법적 보호 관리 체계 구축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며, 상위 법령이나 다른 조례와 비교해 보았을 때, 내용이나 조문 체계, 형식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생각함.

○ 다만, 향후 관련 사업 지원 시 시민 참여 촉진, 관리 책임 명확화 등 시행규칙에서 추가로 보완할 필요가 있어 보임.

4. 질의 및 답변 요지: 회의록 참조.

5. 심사 결과: 원안의결(출석위원 5명-박문섭의원 회피)

6. 소수의견의 요지: 해당 없음.

붙임 광양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·관리 조례안

(제정안)

광양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·관리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회복을 위한 기념사업 지원과 평화의 소녀상 보호·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양시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평화 및 인권 의식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일본군위안부 피해자”란 「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·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 제1호에 따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말한다.
2. “평화의 소녀상”이란 광양시에 설치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기억하기 위한 조형물을 말한다.

제3조(시장의 책무) ① 광양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·관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시민들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 및 평화와 인권의식 향상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사업 및 지원) ① 시장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기념사업

2.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관련 역사적 자료의 수집・보존・관리・전시 및 조사・연구

3.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교육・홍보 및 학예활동

4.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국내외 공동 조사 및 교류 활동

5.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추도공간 조성 등 위령사업

6.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해결을 촉구하기 위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운영 및 홍보

7.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조형물・동상 등 기념물 설치지원 및 보호・관리

8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・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・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③ 시장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관련 법인 또는 단체가 제1항제1호에 따른 기념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.

제5조(평화의 소녀상 보호・관리) 시장은 평화의 소녀상이 훼손되지 않고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「광양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공공조형물로 지정하고, 해당 조례에 따라 보호・관리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.

제6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